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5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6. 15

(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수정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보건행정과장 윤병성)

가. 제안사유

「지역보건법」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(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)

나. 주요골자

-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(건강진단, 예방접종, 순회진료 등)를 하고자 하거나
-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때 지역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
-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 사용을 근절하기 위함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, 제21조, 제26조
- 입법예고 : 2006. 4. 10 ~ 5. 1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- 기 타 : 2006. 5. 23 ▷ 규제심사완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 규정의 건강진단 등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,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

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 규정은 지역보건법 제26조(과태료) 제2항에서 건강진단 등의 미신고,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는 조항에 의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
- 안 제2조(과태료의 부과 등) 규정은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건강진단 등의 미신고,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
- [별표] 에서 지역보건법 제18조(건강진단 등의 신고) 위반시에는 위반차수에 따라 30만원, 50만원,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지역보건법 제21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 위반시에는 각각 50만원, 100만원,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며
- 안 제3조, 제4조, 제5조는 행정절차법,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,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적정하나
-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주체 및 납부기한 등을 명기하지 않으므로,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2조제1항을 신설하여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주체를 명기하고, 안 제1항을 제2항으로,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제4항을 신설하여 과태료의 납부기한 등을 명기하는 등 수정의결합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